검 토 보 고 서

(2016. 2. 1.)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—————1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—————4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
전 문 위 원 김 건 재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6-4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라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21일

3.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가. 개정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,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 명시

- 현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3월 16일로 종료됨에 따라 5년 연장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'2021년 3월 16일까지'로 명시

2)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

3)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

- 교육지원과장 ⇒ 교육청소년과장

- 교육과학기술부장관 ⇒ 교육부장관

4) 일부조문 수정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삭제 (2015.12.10 공포, 2016.1.1 시행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[시행 2016.1.1.] [법률 제13428호, 2015.7.24., 일부개정]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까지로 명시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6-8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라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21일

3.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가. 개정사유

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기금존속기한 연장 및 부칙에 나와 있는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명시(안 제2조의2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까지로 명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 제1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[시행 2016.1.1.] [법률 제13428호, 2015.7.24., 일부개정]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